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23. 10. 20.)에서 의결된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91호

붙임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 사회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진작으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완도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 관련기관·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 장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

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8조(사업의 평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경로사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23. 10. 20.)에서 의결된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92호

붙임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92호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완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완도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9에 둔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

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완도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훈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보훈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재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대지면적 :	m^2	연면적 :	m^2
단체 · 법 인 현 황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원수		
	주요사업 내용				
위탁기간					
위탁목적					
특기사항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완도군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23. 10. 20.)에서 의결된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93호

붙임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1부.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치유도시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교육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항만시설(이하 “마리나”라 한다)”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4. “해양레저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요트 및 원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해양레포츠”란 바다를 활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2장 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완도군의 해양레저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완도군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종합계획 변경) 군수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제3장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제5조(설치)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완도군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련 경기대회 · 체험행사 등의 행사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산업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해양정책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해양레저산업에 국내외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

3. 해양레저 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전국 또는 도 단위의 해양레저산업 관련 협회 이사급 이상인 사람

5. 요트 등 해양레포츠 관련 경기·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6. 그 밖에 완도군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장 해양레저산업 육성 · 지원

제11조(시책 발굴 및 지원)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육성 및 양성프로그램 운영
2. 해양레저 기반시설 설치
3. 수상레저기구 보급 지원

4. 국제보트박람회 등 참가 지원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마리나 조성) ①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 조성 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강좌 개설) ① 군수는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일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양레저 교육·강좌나 해양레저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교육·강좌 및 해양레저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할 경우 해양레포츠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선수 등 육성) ① 군수는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완도군 내 초·중·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해양레포츠 대회 개최 등) ① 군수는 완도군의 해양레저산업 발

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경기대회 ·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 경기단체 및 해양레저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해양레저산업유치)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해양레저시범단

제17조(설치) 군수는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와 완도군의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도군해양레저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시범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레저사업 홍보활동
2.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3. 해양레포츠 경기대회 운영
4. 응급처치 · 심폐 소생술 등 응급구조교육
5. 그 밖의 해양레저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및 임기) ① 시범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단장은 위촉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 ③ 위촉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

1. 해양레저 관련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양레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해양레저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단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범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시범단을 대표하고 시범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단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범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지원

제22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시책사업
2. 제13조에 따른 교육·강좌 및 해양레저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

3. 제14조에 따른 선수 등 육성
4. 제15조에 따른 해양레포츠 경기대회 및 체험행사 등 개최
5. 제18조에 따른 시범단 활동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23. 10. 20.)에서 의결된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이우민 

완도군 조례 제2994호

붙임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94호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 가. 전동킥보드
 - 나. 전동이륜평행차
 -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

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23. 10. 20.)에서 의결된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2995호

붙임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95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

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원의 근무시간은 단원과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단장 및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만약,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합숙소) ①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의3(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부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을 일으킨 경우
4.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를 일으킨 경우
5.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을 주동한

경우

6.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을 행한 경우
7.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경우
8. 대회 부정 출전 ·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에 준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28조제1항 중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을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조정”을 “제3항 내지 제5항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으로, “상향조정”을 “상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파면 또는 해임된”을 “파면 또는 해고된”으로 한다.

-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③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위를 해제하고 출근을 정지시키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감봉은 월 급여총액의 1/10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2한도)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 ⑤ 견책은 시발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
- ⑦ 파면 또는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별표 2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봉의 심의 범위(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직 책	등 급	연 봉		비 고
		하 한 액	상 한 액	
지도자	A급	48,000	53,000	
	B급	43,000	48,000	
	C급	38,000	43,000	
선 수	S급	48,000	70,000	
	A급	43,000	48,000	
	B급	38,000	43,000	
	C급	33,000	38,000	
	D급	28,000	33,000	

(별표 5)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6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금(1위)	은(2위)	동(3위)	비 고
올 림픽 게임	7,000	5,000	3,000	
아시안 게임 세계선수권대회	3,000	2,000	1,000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1,000	700	500	보상금 지급 횟수는 연 5회로 제한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제외)	700	500	300	
그 외 대회	500	300	200	

* 지급대상 :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전국대회 이상을 적용)

* 지급방법

- 선수는 획득한 성적 중 최고의 성적으로 지급한다. 단, 전국체전의 경우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지급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은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종목은 100분의 50만 지급한다.
- 지도자는 최고성적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23. 10. 20.)에서 의결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2996호

붙임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96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23. 10. 20.)에서 의결된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97호

붙임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97호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인입시설”이란 해수인입시설 및 송수·급수관로, 자동제어 등 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인입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기본 요금과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 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수공급 신청) 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 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해수인입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 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최초 설치 이후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공사에 드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부터 계량기까

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 교체시의 시설비는 해수인입시설로부터 계량기까지는 완도군이,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해수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수인입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 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사용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해수 인입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 비용(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에 대한 기본요금과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별표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사용료 체납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완도군 지방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수인입시설 해수공급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사용료	기본요금	-	10,000원	
	추가요금	ton(톤)	200원	

[별지 서식]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사용장소 (사용량)	기 업 명		전화번호	
	주 소			
	1일 소요량	m ³		
	사용 목적	주요 생산품 단순 세척용		
신청자 (사용료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 용 조 건	○ 해수인입시설 고장 및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구하

1. 수집 이용목적

- 가. 해수공급신청서 작성을 위한 본인확인
- 나. 해수공급 신청/변경/해지 처리, 서비스, 사용료 수납 및 청구서 발송,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및 상담, 결제 및 추심, 민원처리
- 다. 위.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해수공급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 보유기간

해수공급 가입기간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자체 없이 파기하며, 요금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24개월 까지, 요금의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동의자 (위 신청인)

(서명, 인)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023. 10. 20.)에서 의결된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2998호

붙임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인 수출 관리를”을 “수출 장려 및 육성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효율적인 수출 관리를”을 “수출 장려 및 육성을”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한”을 “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포장부터 수송”을 “운송”으로, “전 과정을 통합하여”를 “과정을 원활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확보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을 “확보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휴관일)”을 “(휴업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휴관”을 “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휴관하려”를 “휴업하려”로, “휴관일”을 “휴업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

다.

제9조제3항제2호나목 중 “관련 전문가”를 “운영자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단체 임직원”을 “단체의 추천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수출물류센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수출물류센터의 관리를 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출물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 한다.

1.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군 지원금

2. 이용료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수출물류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자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출물류센터의 관리 운영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 수입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용료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2. 수출물류센터 운영 예산의 편성 및 변경의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⑦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출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
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유통가공팀장이 맡는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수출물류센터
를”을 “위하여”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완도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
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보험 가입)”을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의 감면 등의 사항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 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료를 수출물류센터의 관리·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출물류센터 각 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동 이용료(급속동결가공시설, 자숙기, 일반가공시설 등)
 2. 냉각수 사용료
 3. 냉동창고 사용료
 4. 수조 임대료 등
- ④ 각 시설의 이용료는 수출물류센터의 관리·운영비용, 원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완도군 규칙 제1274호

붙임 완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완도군 규칙 제1274호

완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완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2조제3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완도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완도군수



완도군 규칙 제1275호

붙임 완도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1부.

완도군 규칙 제1275호

완도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완도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도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자로 한다.

제4조(구성방법) ①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업 공고 후 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완도군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

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위·해촉)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

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①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

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

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부서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 회피 대상 평가위원

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⑥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심사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

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전문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교	학위	전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사업명 :

기피·회피 위원

성명	소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연락처 :

직위 :

성명 : (인)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사항

○ 사업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평가위원	평점			비고
	△사(예시)	○사(예시)	□사(예시)	
A				
B				
C				
D				
E				
F				
G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계				(최고점수, 최저점수 제외)
평균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성자: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보 안 각 서

○ 사업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완도군수 귀하